-안녕하십니까? 시간 됐는데요. 저희 2단계 숫자도메인에 대해서 오늘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한결한울에서 일하고 있는 윤복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소자원분과라고 있는데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회식 때 봤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같이 모여서 정책을 의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부도 관련되어 있고 학계 산업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 때 자기 의견들을 개진해서 매월 회의하는 오늘 2단계 숫자도메인에 관합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기사 쪽 말고 다른 쪽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기사 아닌 거에 나오신 분들은 2단계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질까 설명할 뻔했다가 대부분이 알고 계신다면 생략하고요.
원래 오늘 공개 수렴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존 법제를 만들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잖아요. 2단계 숫자도메인 공개한다고 하는 중요한 정책의 법이 바뀌지 않아요. 인터넷 준칙 개정이거든요. 준칙도 하위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법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식 공청회가 법에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인터넷 세계에서 룰을 바꿀 때는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통이 있어 봤고 아이칸에서도 피디피 절차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가 다는 아닐지언정 공개적으로 성과를 오픈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교수고 기술자원분과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활동도 하고 있고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이영윤이고 분과 활동을 하고 있고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고 카운셀러 지금 거의 2004년부터 대표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아주라고 해서 그냥 사회가 됐는데 제가 구성한 게 아닙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기초에 따라서 다양한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활동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회 쪽에서 편중이 된 부분이 있어서 플로어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원래 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과기정통부 주도해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작업반에 포함하신 교수님들이 시간이 다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그분들이 오셔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한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특수번호 등록의견이 있다고 하면 생생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이정민 팀장께서 대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용 자체는 이정민 팀장님께서 주로 도입정책안에 대해서 주로 발표를 해주시고 두 패널분들께서 의견을 말하신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오늘 2단계 숫자도메인에 대해서 도입 정책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정책 도입 관련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돕고자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추진 배경과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드리고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안 마련하기까지 경과 도입 정책 연구 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도출된 숫자도메인 도입 외에 도메인 관리준칙 개정 의견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2단계 숫자도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이 자리가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내가 관심 갖고 알려고 하는데 너무 기초는 건너뛰고 간다 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지겨울 수 있지만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관한 법률이 있고 법률 제 5조에 따라서 과기정통부가 3년단위로 해서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브랜드 15881588 이런 것들은 숫자도메인 2단계 도입하겠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숫자도메인 뭐냐 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 주소로 도메인 사용되고 있는데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 맨 오른쪽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보통 앞에서부터 1 2 3 4 할 것 같지만 도메인 특징상 오른쪽 끝자리 1단계라고 탑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국사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닷컴 닷넷 같은 제네릿 GTAD라고 합니다. 어떤 채가 있는지 먼저 아셔야 하고요. 1단계 앞에 저희가 사용하는 게 2단계 부분이 있는데 2단계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여기 보시면 3단계 도메인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3단계 도입이 됐습니다. KR이 있고 2단계 29개의 이미 정해져 있는 도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co. or. 또는 go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29개 중에 선택하는 거고 3단계 부분에 희망문자를 넣는 거예요. ABC 주식회다 그러면 ABC.co.kr. 정부기관인데 ABC.go.kr.
2단계 도메인이라고 하면 KR 앞에 희망문자열이 오는 축소된 형태죠. 그래서 KR 도메인 2단계가 있고 .한국도메인 2단계 도메인만 있습니다. KR은 3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습니다. .한국은 2단계만 있다 이해를 해주시는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 부분 희망문자열 부분에 숫자를 사용한다 이런 부분인데 1577 -1577.kr 이런 식의 도메인을 도입하자는 건데 2단계 숫자도메인 왜 허용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왜 그동안 등록을 못했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하이픈 바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3단계 도메인에서는 희망문자열 쓸 수 있었는데 2단계에서는 막아놨어요. 도입당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넘 서비스 휴대전화 번호에다가 .kr 붙여서 팩스 전화 이메일 한 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도입해 보자라고 해서 표준이라든가 활발히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스마트폰이 공급이 되면서 메일 보내는 것도 모바일에서 클릭 하면 앱 실행해서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게 됐어요.
2단계 숫자도메인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용도로 쓸 일이 없어졌으니 제한을 풀자 이런 취지로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라는 순한글 도메인 도입 취지가 있는데 숫자를 등록을 하는 거는 의미랑 맞지 않는다 해서 한글이 한 글자 이상 통합이 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풀자라는 것이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숫자도메인 도입 과정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상표전문가에서 참여를 하였고 공통사항들을 논의하고 5월에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오늘 행사 주최기관이죠.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의견수렴이 들어왔고 이메일뿐 아니라 주사자원분과회의를 통해서 의견 접수받았습니다.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 잠시 후에 패널리스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검토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해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공성을 갖는 특수번호 제한할 것이냐. 기존에 전화번호들입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120, 119, 128 등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 기관이 예를 들면 119.kr이라는 도메인 접속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119 생각하는 전화번호와 같은 페이지가 떠야 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왜 홈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혼란방지차원에서 119라든가 공공질서 안전과 관련된 번호는 해당기관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의견을 줬습니다. 신고번호는 119.kr 같은 경위에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맞지 않겠냐. 방송통신민원 1335 같은 4자리 번호들이 있어서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번호를 뭉뚱그려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번호 의미를 사실 공부를 했었고요.
전부접수 115 번호는 제외한다 182 107 188 같은 번호들도 해당기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의견입니다. 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로 장기간 사용해온 100번호가 있습니다. KT 고객센터 번호고 101 LG유플러스 고객센터 번호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기정통부에서 고시로 해서 이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인데 쓰게 하는 게 맞느냐. 연구반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도 일단은 의견은 내야 되니까 다수결 내지는 과기정통부 관계 과하고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번호는 등록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혼란방지를 위해서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 초입에 2개월간 해당 기관에서 우선등록기회를 부여해서 도메인을 등록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쓴다고 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욕설 등 비속어 숫자도메인 관련해서 등록제한이 필요하느냐. 연구반 의견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배경은 사실 비속어라는 게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는 비속어다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을 제안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찾아봤는데요.
3단계 kr 도메인 등록할 때는 비속어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로 도입할 때는 제한을 한다.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번 현행 영문 한글 도메인 관련해서 등록제한 도메인들이 있는도 등가로 표현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있는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한하려면 18이다 그러면 18이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는 것까지 제한을 해야 하느냐. 숫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냐. 그러면 1328 힘을 내 18이 들어가죠. 그러면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325.kr 등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 제한을 하지 말자. 그리고 용도에 맞춰서 어떤 기관을 비방하거나 그 기관이 정말 잘못해서 기업을 비난할 때 쓸 수도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그냥 두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하였고요.
세 번째 휴대전화번호 등록 제한인데요. 연구반에 특허청 심사관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전화번호 자체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허

청에서 운영하는 검색사이트가 있는데 숫자 상표가 검색이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때 해줘야 된다고 해서 됐던 적이 있어서 그런 숫자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고 숫자와 의미가 결합된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특허청에서도 숫자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숫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여러분들 바꾸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10년 후에는 내 번호가 아닐 수가 있는데 도메인에서 독점할 수 있게 등록까지 해줘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반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번호만 등록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법률이 있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굳이 인터넷 주소자원 법률 하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한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의견이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3단계 도메인에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다음은 4번째인데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입니다. 고유식별번호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도 있습니다. 여권번호 써 있기는 하지만 문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M 자가 들어간다거나 여권번호는 제한 없이 등록이 되는 상태예요.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번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면 안 된다고 선언적으로 기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소 등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3단계 KR 도메인 등록 수립 당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에 숫자 등록된 3단계 숫자도메인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4400에서 4600개는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도메인 등록하려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무 내용을 써놓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 등록 제한한다는 문구를 써놓고 만약에 된다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연구반의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선등록정책적용 범위입니다. 우선등록은 뭐냐면 예를 들면 KT 같은 통신사한테 100번호를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보통 도메인이라는 게 선 접수 선처리. 먼저 등록신청을 하신 사람 등록할 수 있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특정기간을 두어서 한시적으로 이분들에게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표권자에게 우선 등록기회를 주자라는 건데요. 상표권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도 인주법에 따라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존재를 하고 상표관련 25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 상표를 침해당했다 도메인 등록한 사람으로 인해서 침해당했다고 했을 때 는 그분한테 도메인을 이전하도록 하거나 등록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말소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신청을 할 때 최소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88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3인 조정부는 2배가 소모가 되거든요. 분쟁조정신청도 해야 죠 기업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두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애초에 우선등록기간을 두어서 2달 정도 기회를 드린 다음에 일반에게 공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의견입니다.
상표권자에게 순수 숫자만으로 등록한 상표권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는 아니다. 그래서 상표 중에 일이바빠 1288 딤섬 9898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구영구 이런 게 있는데 이

런 것들을 우선등록 대상으로 주지 말자 하는 게 의견입니다.
상표권자가 혹시라도 2개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복수 신청을 하게 되면 추첨 방식을 이용을 해서 결정을 하자는 거고요. 인정여부 판단을 등록을 직접 받으시는 18개 등록대행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등록대행자를 통해서 접수된 신청서를 상표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례별로 적합성 기준이 필요하다. 유효성 취지에 맞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우선등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3단계 도메인 등록자인데요. 이분들에게 기존 3단계 등록자는 뭐냐면 1234.co.kr.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단계 도메인 우선 등록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게 의견이고 이것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작년말 기준 4400여 건. 이용자 혼란가능성이 맞고 변화하는 시대에 영구불변의 우선권 제공은 부적절하다 3단계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영역 2단계를 쓰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까지 기회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2단계 2006년도에 ABCD.kr. co나 or 먼저 드렸어요. 등록시기가 빠른 분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분께 우선권을 드려서 2단계 영문 KR 등록할 기회를 먼저 드렸고요. 11년도에 한글.kr 도메인이 있었어요. 꽃배달.한글을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kr과.한국은 다른 영역입니다. 우선권을 드리지 말자라고 해서 우선 등록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숫자도메인과 상관없이 연구반이 모인 김에 도메인 관리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개정사항이 없는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한글.kr 한글2350자만 허용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한글.kr 도입할 때 시스템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서 KS완성형 표준한글코드 사용하자 해서 2350자만 허용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유니코드가 일반화 되면서 한국도입시 유니코드상의 완성형 한글글자수 11172자로 확장해도 됩니다. 뷁 이런 글자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글자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이 다 됩니다.
가나다라 기역 니은에다가 모음을 합쳐놓고 받침을 있는 것보다 기역 시옷 쌍시옷 이런 거 있죠. 확장을 해도 되겠다 준칙 개정안 내용이어서 별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다음 영문자만 구성된 한국도메인 허용하자는 건데요.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11년에 한국도메인 도입할 때 영어비문해계층 인터넷 이용접근을 돕고 한글의 우수성 전파를 위해서 영문자 한국 등록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8년이나 지나고 확대를 위해서 허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한을 해지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글GTLD 도메인이 있었습니다. .닷컴 .닷넷 이런 형태인데 관리기관 외국에 있는데 닷컴 닷넷을 등록하고 싶었어요. 아이칸 정책에 따라서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렇게 영문자가 아닌 도메인들을 다국어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다국어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 이상만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어요.
영문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세 글자 이상입니다. 다국어 도메인은 두 글자로 줄여준 거예요. 한 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상. 그래서 .닷컴 이렇게 되었는데 한글도메인이지만 영문.닷컴 이렇게 등록이 가능한 상태다. .닷컴 도메인도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접수된 의견을 모아서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 최종안을 작성을 하고 최종안에 대해서 인터넷 주소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오는 12월에는 숫자도메인 등록을 단계적으로 개시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잠깐 메모해주셨다가 패널 발표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주소분과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토론을 많이 했었고 연결되면서 이런 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제안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특수번호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반사업자에서는 강조 강요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비속어에 대해서 98년부터 29개 지금 도메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2단계 도메인에 굉장히 제가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비속어가 이슈가 됐는데 정보통신망법 법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다양해졌고 비속어라는 게 문화 시대에 따라서 비속어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의견 수렴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주민등록번호 통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타당할까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거는 휴대전화번호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왜 안 될까. 개인정보보호 핸드폰번호도 개인정보일 거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막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왜 법으로 해당하지 않아서 굳이 해야 될까.
두 건에 대해서 제시하는 논리가 서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그 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번호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거까지 가야 할 거고 불가하다면 6자리-7자리 모두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긴 번호 누가 쓰겠어 할 수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 표현의 다양성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책이 가는 거라고 한다면 주소공간이 사라지는 거에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 요청을 했을 때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동의가 되지 않아 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단계 숫자도메인 연다고 그랬을 때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도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IP 주소 사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서 숫자를 처져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 잘못 치면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도메인 잘 만들었다 그런데 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 상표인 경우에는 필요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사실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알파벳에서도 최상위도메인도 작년, 재작년. 아, 아니네요. 벌써 10몇년이네요.
최상위도메인을 새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숫자를 개방을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부분 연구반에서 내놓으시는 의견에 저는 정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공공번호 이런 번호 중요할 것 같고 한시적으로 우선 등록 이런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우선등록의 경우에는 숫자로 된 것만 우선등록을 허용한다. 이런 것도 맞는 것 같고.
휴대전화 경우에도 혹시 누군가 악의적으로 내 번호를 이용해서 도메인을 만들고 그야말로 나의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 번호를 바꾸면 되니까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교수님하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경우

에는 막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도메인 2단계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딱 이렇게 일종의 딱 귀에 들어오는 8282 같은 거 그런 경우에나 등록을 하지 6숫자 -7숫자 되는 복잡한 숫자를 IP 주소가 힘들었기 때문에 도메인 사용했던 것을 생각해 보자면 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굉장히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분과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번호이기 때문에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어디인가 써넣을 때도 동의합니다. 이거 해야지만 등록이 되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봤을 때 혹시나 정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내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해서 도메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거의 그럴 경우도 없을 것이고 거의 자기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숫자도메인 5개 이상을 사용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해도 거의 사용을 안 될 거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키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등록정책에서는 그야말로 의미가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등록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한 그런 사예가 있기는 하지만 숫자 경우에는 그야말로 숫자로 된 상표권 이외에는 꼭 미리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특히 비속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고 최상위 도메인까지 허용이 된 마당에 꼭 이런 것들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준칙개정의견은 저는 정말 모든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제한을 완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한글은 2350자는 윈도우에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전 윈도우에서 유니코드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로 주민등록번호 하고 여권번호도 포함되어 있는데 참고로 고유식별정보라고 하는 번호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휴대전화번호는 허용하는데 왜 주민등록번호는 안 돼? 조금 급은 달라요. 고유식별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하거나 법조항도 달리 좀더 하이리스크로 관리해 주는 그런 정도로 참언을 하고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왔으니까 이정민 의견을 들을까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16계열 18계열 CJ헬로라든가 케이블 텔레콤 이렇게 흔히 보이지 않는 민간사업자의 번호가 전기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합리성은 알겠는데 차별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기업입장에서는 과기정통부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기업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업은 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등록 기회를 못 받는 게 타당하느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사회자인 관계로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일찍 마치는 바람에 플로어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그거 이외에도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좋고 개인 의견도 좋습니다.
-제가 플로어라고 말해도 되는지.
-현재는 플로어 맞습니다.
-위치는 플로어니까 패널분들 계시니까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선등록을 허용하게 됐을 경우에 상표권에 해당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선등록을 허용한 뒤에도 등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메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등록허용이 끝난 다음에 등록한 사람과 먼저 등록했던 사람이 분쟁이 났을 때 어떤 권리를 서로 가질 수 있는지. 우선등록을 허용

했는데도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안 했다가 나중에 침해받았다고 우선등록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고유식별번호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번호는 휴대전화번호와 달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그 사람이 태어난 출생지 성별 지역까지 다 나오고 변동 그러니까 휴대전화는 그게 악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하고 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번호는 변경의 유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는 별려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숫자도메인 규제를 많이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IP숫자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 다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들께서 저에게 양보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제 개인 견해인데요. 우선 등록기회를 제공했다는 거 하고 분쟁은 별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상표 사용자가 상표권 등록을 자체 안 했다 그러면 매우 약하고 전문용어입니다. 부적용제 보호 말고는 미등록제 보호는 매우 약하거든요. 그걸 말할 때는 권리위에잠잤다 미약한 권리로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숫자도메인 하는데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표 맞지 2개월 안에 안 했지 불이익 받아야 해 이 정도는 센 조치거든요.
따라서 우선등록기회를 줬다는 것은 하나의 메리트를 준 건데 우선권을 준 것을 안 받은 대가로 불이익을 받아서 상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이건 과장스러워 보여요. 감안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등록기회가 없었던 것에 반해서는 기회가 버렸기 때문에. 알고 버렸는지 모르고 버렸는지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등록을 안 한 요소 침해를 했다든가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하나의 요소 판단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인 의미가 되지 않고 상표권 등록 자체를 안 해서 강한 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약한 조치.
그리고 기업들이 도메인 등록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경우에는 방어적 도메인을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부담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 의견에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 혹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개인 의견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플로어 의견, 질문 듣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 있는데 일반 사용자로서 질문인데요. 주민등록번호는 막고 휴대전화번호는 오픈한다는 건데 휴대전화번호 자기 번호 오픈하고 다른 사람 번호를 쓸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스팸전화가 온다거나 제 동의 없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고통 받는 입장에서 빨리 번호를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프로세스가 도메인을 없애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패널께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소송은 누구든지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둘 거냐.
-우리에게는 소송만 할 게 아니고 도메인을 빨리 없애달라고 했을 때 정지 상태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답하시기 전에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민등록번호든 전화번호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지니고 있는 문제잖아요. 다른 정보가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랬을 때 그 피해가 바로 발생했을 때 내 번호가 분쟁의 과정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야 하나. 내 번호인 거를 확인만 해주면 스톱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번호를 쓰는 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번호를 말씀을 드리는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홈페이지에서 내 주민등록번호갖다쓴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막는다는 자체는 만약에 그런 이용의 요구들이 많은데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사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수집할 때는 법에 의해서 수집을 해라 이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복잡한 숫자였을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못 쓰게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걸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제가 잘 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못하게 했는지 또는 주민등록법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을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다룰 때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는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 얘기하고 패스트트랙 얘기까지.
-일단은 주민등록번호 처음에 고유식별번호 등록 금지한다 그다음 타인의 고유식별번호 금지하는 내부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주민등록번호를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고민이 많았어요. 등록대행자간에서 걸러내서 실제 있는 번호인지 없는 번호인지 쉽지 않고 등록 그러면 왜 막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런는 문제도 있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도메인 등록을 할 때 타인의 고유식별번호 등록했을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다는 원인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 한번 고려를 하고 반드시 그 과정에서 오케이 확인했어라는 거를 하신 다음에 도메인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이디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 하는 것 자체는 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허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내 주민등록번호를 타인이 등록을 해서 악의적으로 사용을 했다 혹은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쁘다 해당 고유식별번호와 관련 있는 분이 인식을 했을 때 말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칙단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법에서 얘기를 해야지 임의로 절차 집행하는 거는 법개정사항이다.
휴대전화번호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타인의 것은 등록을 못하게 하되 영업상 필요해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등록할 수 있게 두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의견 주시거나 당부할 사항 있으시면.
-여전히 어떤 문제사항인데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서 완전하게 말소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호조치가 들어갔을 사항에는 목적과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바로 내가 쓰는 번호라고 했을 때 금방 본인이 확인이 되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패스트트랙을 만들려면 법 개정의 사안. 무슨 얘기냐면 타인의

번호임이 밝혀지면 말소는 별개라고 행정조치니까요. 그러 면 일단 사용금지. 굉장히 센 조치거든요.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휴대전화만 해도 번호가 옮겨지거든요. 현재는 안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스톱 하는 것은 강한 조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조치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반대 패스트트랙 조치를 어떻게 설정해서 어느 경우에 가게 할 거냐 굉장히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게 의견이고요. 저는 찬반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만든다면 엄격하고 강해야 될 거다 그런 부분이 충분한 응원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말까지 오픈한다는 게 간다면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민원거리가 많이 되면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안이 나오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들. 너무 플로어 시간을 충분히 드렸나? 점심을 일찍 먹을까요?
-연구반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엄청 오갔는데 주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휴대전화번호 이런 건 두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바뀔지언정 본인 휴대전화번호는 체크를 하는 본인 것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플로어에서 얘기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때 빨리 해결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말했던 거 같고 본인 번호 이외에는 안 돼 라는 네거티브 정책이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후퇴 같은데. 제가 볼 때 신중함이 필요한 주제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 비슷하죠.
그러면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 나눠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
-그러면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아니어도 다른 사업자의 번호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1588 1588 그 번호 자체도 내 번호가 아니야 그런데 내 번호가 아닌데 그 업체가 나쁜 짓 한 것만 이렇게 올리는 악의적인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타인의 광고 영업 번호를.
-그것도 고려를 한 건가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이 굳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저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업자가 하고 있는 번호를 가지고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럴 때 분쟁조정을 할 것이냐 상표권이 아니잖아요. 전화번호니까.
-아닌 것들도 있는데 주지정용성을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정 완료딜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사람은 하고 있고 나는 시간이 걸리는 거.
-진짜 분쟁 조정이 필요한 상황 같아요. 엔티사이트로서 합법적인지. 참고로 엔티사이트 합법적 맞습니다. 타인의 고객을 빼앗아가기 위한 나쁜 형태로 악용이 있는지 진짜 분쟁에서 세세히 다뤄봐서 아까 차라리 남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단순한 의도거든요. 영업 관련한 신중한 패스트트랙이 아닌 정식트랙에 옮겨야 하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만약 의견이 없으면 종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주고 여기 올해 말이라서 급하지 않느냐 의견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민한 부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신중하게 여러 의견들을 오늘 이렇게 공개의견수렴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됐다가 아니라 넓힌 의견수렴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분간 해봤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픈라인 자리에서의 공개의견수렴은 여기서 마치겠고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한국을 할 때 많이 참여해봤는데 의견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보다는 사전에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 찬반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게 많이 됐던 만큼 그다음 정책은 안정적이라는 게 제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방면에서 의견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플로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식사 지금도 된답니다.